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850호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2008.0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2013.02.2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56호(2016.06.02.)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5호(2017.06.01.)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6호(2017.07.20.)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7호(2017.11.16.)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7-98호(2017.11.30.)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2호(2018.04.19.)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5호(2019.04.04.)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9-82호(2019.10.24.)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07호(2023.05.25.)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4-5호(2024.1.18.)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1호(2024.06.27.)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24-107호(2024.08.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24-137호(2024.11.14.)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10. 23. ~ 2025. 11. 7. (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공람장소

- 1)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02-820-1981)
- 2)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825-7516)

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90번지 일대
 - 나) 면적 : 94,947.8㎡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27, 상가A동 B202호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44개월
-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7년 11월 27일(최초) 2024년 11월 14일(변경)
- 6) 변경신청 내용 : 통합심의 의결 반영 등에 따른 건축계획 등 변경 ※세부내용 공람도서 참고

라.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서면 작성·제출

마.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바. 기타사항 :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은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부서)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858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관내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과-20461(2025.10.2.)로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번	시정 의무자	대지 위치	위 반 사 항	부과예고 금액	비고
1	김*남 외 1인	노량진동 3*-2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	1,637,140	
2	백*옥	대방동 3*4-2	지상2층(201,202호)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	9,414,090	
3	진*철	대방동 3*1-7*외2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2호, 3호를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	8,550,360	
4	김*환	사당동 1**7-1*	지상2~3층 무단대수선(계단)	347,980	
5	권*탁 외 1인	사당동 2*0-2*	근린생활시설 내 취사시설 설치 (무단용도변경)	315,410	
6	진*철	상도동 3*7-9	지상2층 201호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위반면적: 53.36㎡)	4,028,680	
7	백*수 외 1인	흑석동 1*6-6*	지상 201호, 401호 각 1세대 → 2세대로 증가(무단 대수선)	1,019,660	
8	이*영 외 1인	흑석동 1*6-6*	지상 301호 각 1세대 → 2세대로 증가(무단 대수선) 지상202호,302호각1세대→4세대로증가(무단대수선)	1,019,660	
9	이*영 외 1인	흑석동 1*6-6*	지상 202호 각 1세대 → 4세대로 증가(무단 대수선)	1,419,880	
10	이*영 외 1인	흑석동 1*6-6*	지상 302호 각 1세대 → 4세대로 증가(무단 대수선)	1,419,880	
11	백*수 외 1인	흑석동 1*6-6*	지상 401호 각 1세대 → 2세대로 증가(무단 대수선)	732,730	
12	신*준	흑석동 1*1-1	지하1층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내 복층 약 41㎡ 무단증축	9,241,400	

2. 공고기간 : 2025. 10. 23. ~ 2025. 11. 6.(14일간)

3.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4.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25. 11. 6.까지 (동작구청 건축과)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6. 처분내용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오니 납부기한인 2025. 10. 31.까지 납부하시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료 시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 구(참조: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